

월요광장

허위 자백과 오판, 그리고 우리사회



강용주
광주트라우마센터장

2015년 2월 '땀방 회향'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현아 부사장이 구치소에서 '갑질'을 했다고 합니다. 서울 남부구치소에 2개월에 없는 여성 전용 변호인 접견실 중 하나를 '시간 때우기용'으로 장시간 동안 독점해 다른 변호사들과 여성 의뢰인들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하네요.

우리헌법 제 12조 4항에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질이라는 비판이 생기는 걸까요? 그것은 일반 사람의 경우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가 도입된 때는 2008년입니다. 그 뒤로 조금씩 늘고 있지만 대검찰청 발표에 따르면 2012년 당시 단지 0.13%에서만 검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 참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권리로서 '누구든지' 누리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능력이 있는 0.13%만이 '선택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미국 영화에는 경찰관이 범죄자를 제압한 뒤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장면이 자주 나오지요. 피의자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고,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경제 능력이 없는 경우 변호인을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헌법도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제12조 제2항)고 진술거부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 송치된 형사사건 중 묵비율과 부인율은 지난 2007년에 각각 10.1%, 0.0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반면 형사사건에서 피의자가 자백하는 비율이 한국은 90%로 영국(60%)이나 미국(45%)의 두 배 가까운 수치입니다. 여전히 '자백은 증거의 왕'의 자리에서 권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판사는 좀 다를까요? 1심 재판 무죄 선고율이 미국 16~41%, 영국 20%에 비해 우리나라는 턱없이 낮아 1%가 못된다고 합니다. 형사 절차상 피의자의 진술, 그

중에서도 자백 진술을 담은 증거물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데 현저히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최근 나온 논문도 이를 뒷받침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이뤄진 '오판에 관한 연구'로, 김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무죄판결과 법관의 사실 인정에 관한 연구'입니다. 1995년부터 2012년까지 1심에서 유죄였다가 2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뒤집힌 강력사건 540건을 조사했는데, 그 중 170건(31.5%)에서 피고인 또는 공범의 허위 자백 때문에 나온 오판이었다고 합니다. 이 논문이 대상으로 삼은 시기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12년까지입니다.

87년 민주화 이후 10여년이 경과한 후에도 왜 허위 자백에 의한 유죄판결이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 거기에 대한 대담을 주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허위 자백과 오판'입니다. 고문과 폭력을 가하지 않아도 허위 자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의자의 심리를 조종하고 속이며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위해 경찰이 사용하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허위 자백과 오판'입니다. 고문과 폭력을 가하지 않아도 허위 자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의자의 심리를 조종하고 속이며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위해 경찰이 사용하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허위 자백과 오판'입니다. 고문과 폭력을 가하지 않아도 허위 자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의자의 심리를 조종하고 속이며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위해 경찰이 사용하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허위 자백과 오판'입니다. 고문과 폭력을 가하지 않아도 허위 자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연말, 경찰청은 '피의자가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자유롭게 보장되도록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거부하였습니다. 검찰은, 헌법상 권리가 '진술 거부권'인 묵비권을 행사하라는 조언을 했다고 민변 소속변호사의 징계를 요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하도록 '강요'했다는 이유입니다.

헌법상 권리는 '헌법전'에만 있어야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여전히 자백에만 의존하는 수사 관행,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역할에 대한 전박하고도 적대적인 인식, '무죄가 선고될 때까지는 유죄'라고 보는 선입견, 이것이 우리의 형사사법 제도의 현실인 것 같아 씁쓸합니다.

저는 1980년대, '고무호스와 곤봉'으로 상징되는 이른바 '3급수사의 시대' 당시 조사실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 때의 풍동기와 고문은 사라졌다 해도, 조사실의 어둠과 압축, 수사관들의 '유죄심증'에 기초한 수사방식이 바뀌었다는 증거는 아직도 찾아볼 수가 없군요.

그 어둠과 압축을 밝게 비추는 빛이 있어야만 누구에게나 공정한 형사사법제도, 헌법적 권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허위 자백과 오판'이 책의 진지한 일독을 권합니다.

법조칼럼

편견 없이 바라보기



이건호
변호사·법무법인 이우스

총 10회의 절도 전과가 있는 A씨. 갓 스무 살이 되었을 무렵 처음 교도소 생활을 시작했으나, 마흔 두 살인 A씨로서는 인생의 절반을 교도소에서 지낸 셈입니다. 그런 A씨가, 이번에는 출소한 지 채 석 달도 되지 않아 대로변 상가건물 2층 주택의 열린 창문을 넘어 들어갔습니다.

당시 화장실에 있던 B씨는 황급히 자신의 남편 C씨에게 문자를 보내 '집안에 누군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는 작은 방에 숨어 남편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립니다. 다행스럽게도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일하던 C씨는 10여분

만에 집에 도착해 거실에서 서성이고 있던 A씨를 직접 제압합니다.

그렇게 A씨는 상습절도미수라는 죄명으로 또 한 차례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1심법원의 판단은, '여러 차례의 절도 전과가 있는 A씨가, 상습으로, 피해자 B씨의 집에 들어가 작은방과 거실에서 훔친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드러난 사실만 놓고 보면, 1심법원의 판단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10차례의 절도 전과로 인해 절도의 상습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절도의 상습성이 인정되는 이상 A씨가 단순히 주거침입에 그쳤다면 할지라도 법리적으로 상습절도미수에 해당한다는 점은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A씨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무언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경도 정 신지체로 인해 대화를 이어나가기도 쉽지 않은 A씨가, 수사기록에 편철된 피의

자신문조서에서와 같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해 너무도 상세하게 진술하였다는 점을 도무지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A씨가 저에게 직접 말하는 '길을 잃고 헤매던 중 친구 집인 것 같아 들어가게 되었다'는 황당한 이야기에 좀 더 귀 기울여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절도 전과 10범이라는 A씨의 범죄전력에서 오는 편견을 버리고 이 사건의 실질을 바라봐 주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A씨가 앞서 10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는 과정에서 A씨가 어떤 목적으로 그곳에 들어온 것인지, 그러려 전혀 모르는 이의 집에 들어온 A씨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 고민을 가졌던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면 대동소이한 내용들로 처벌받았던 이전 사건들에서 어느 누구라도 A씨의 상태에 의문을 가져주었다면 A씨의 지난 20여년의 인생이 범죄와 그에 대한 처벌로 점철되지는 않았을지도 모르

지요.

아직까지 저는 A씨로부터 고맙다는 인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A씨는 저한테 고맙다는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저는 이미 충분한 보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A씨에게 가져야 할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직업이나 나이, 성별과 같은 정보들에 의존해 누군가를 이해하고, 또 평가합니다. A씨의 경우에 세상이 A씨를 이해하고 평가했던 가장 주된 기준은 절도 전과 10범이라는 범죄전력이었지요.

얼마 전 또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선생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자신이 담임을 맡게 된 반의 학생들은 항상 착한 애들이었던 것 같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 아이들이 착한 아이들이 되어 주었던 건, 그 선생님께서 이전 학년에서의 성적이야 평가로 인해 편견을 갖지 않고, 그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었기 때문일 것이라고요.

기고

총장으로 활성화를 위한 명품상점가 만들기



김종수
동아일크 대표

인생은 만남이다. 만남의 의미는 사람마다 다양하겠지만 우리 상인들은 매일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기쁨이 있다. 2015년 청양외의 해인 올해에도 많은 고객을 만날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넓다. 그 넓은 세상은 작은 우리들로 구성되어 있고, 함께 생각하고 협력과 실질을 할 때 비로소 아름답고 희망찬 세상이 구현된다. 협력과 상생 그 가운데 총장로 상가가 있었다.

총장로 상가는 한때 호남의 경제중심이었다. 말이 필요 없는 최대의 변화가로

대표적인 중심지였으나 현재는 도청 이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동안 도시 공동화를 방지한 결과, 상권은 물론 상인들 마음까지 활력을 잃어버렸다. 다행인 사실은 최근 들어 전문가들이 새롭게 들어섬 문화전당과 연계해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도시개발, 신도시, 혁신도시 단지조성은 지양하고 기존도시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총장로 상가를 중심으로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재개발 아파트신축 등으로 발전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총장로 상가에 간판 하나라도 걸기 위해선 조상의 묘를 잘 써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호황기도 있었다. 이런 역사와 전통이 있는 아름다운 거리를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해 활성화하는 데 있어 '우리는 없고 나만 주장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해본다. 상생과 소통으로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투자에 인식했던 것은 아닌지 자책해본다.

총장로가 옛 명성을 다시 되찾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뒤늦은 후회로 그치지 않기 위해 고객과 상인 모두 행복한 총장로 만들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해본다.

첫째, 자기중심적이고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마음을 혁신하자. 유통환경과 소비자 욕구는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그러나 상인들의 마음과 판매모습은 이에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달라진 시대를 깨닫는 것은 개인과 상가 모두가 살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이다.

둘째, 상인들이 상생협력의 관계로 단합해야 한다. 상가 대표들은 전문가이다.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과 상인, 지자체가 협력해서 특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연구모임 등을 통해 상생 협력으로 가능성 있는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자.

셋째, 최고보다는 오직 하나뿐인 나만의 유일한 상징가로 달라져야 한다.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개성과 특색이 넘치는 곳으로 변모하자. 고객이 상가와 상인의 전문성을 믿고 찾을 수 있도록 만들자. 다른 곳에선

만날 수 없는 특별한 상가로 달라져야 한다.

넷째, 장사가 아닌 사업을 하자. 장사는 매출을 올리고 이익을 남기는 데 중점을 두지만, 사업은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여 만족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경영을 해야 한다.

다섯째, 특화거리 조성과 글로벌 명품 시장을 목표로 나아가자.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해서 외국인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하자. 보고 먹고 살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해 남녀노소가 찾을 수 있는 총장로를 만들자. 광주라는 정체성을 지키며 낮과 밤에 활력이 넘치는 도시, 외지인들이 꼭 한번 방문하고 싶은 광주, 다시 찾고 싶은 장소로 만들자.

마지막으로 문화전당 특별법 개정안 통과와 9월 문화전당 개관이 차질 없이 진행 되도록 관심을 갖자.

광주시민과 총장로 2700여 개 점포 상인들의 기대 속에 전당이 성공적으로 개장하고, 총장로에 다시 활기가 넘치기를 기대해본다.

社說

정치권 민생파탄 우려 설 민심 직시하라

설을 통해 본 정치권에 대한 민심은 싸늘했다. 청산과 기대보다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경제난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와 여야에 대한 질책이 쏟아졌고 어느 해 보다 분발을 촉구하는 주문 일색이었다.

출범 후 2년 동안 소통 부재와 인사의 난맥상, 성과없는 경제정책 등으로 추락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설 직전 국무총리 임명과 4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으나 실망감만 안겨줬다. 이완구 총리는 병역과 부당성 의혹을 넘어 상식 이하의 몰염치한 언론 외압 발언으로 국민의 기대를 접었고 후속 장관들에도 대통령의 최측근들로 획기적 쇄신과는 거리가 멀었다.

설 민심은 여당인 새누리당에도 사나웠다. 개선될 기미가 없는 경기침체에 대한 국민의 '아우성'을 접했다고 자신들이 한목소리로 말할 만큼 부정적 기류가 강했다.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해 자신들의 무능함이 더해지면서 고정 지지자들의 이반을 실감했을 것이다.

호남민심도 별반 다르지 않아 정치권에 대해 비난이 쏟아졌다. 정부 여당은 물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존재감 상실에 대한 지적과 호남의 박탈감을 해소하는데 주력하라는 여론이 기조를 이루었다.

아시아문화전당 조성 특별법조차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해 개관에 차질이 불가피한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지역현안에 대한 야당의 대처가 항상 안이하다는 것이다. 계파간 다툼을 끝내고 호남을 기반으로 전국민의 신뢰를 얻는 수권정당으로서 면모를 갖춰달라는 당부도 많았다.

정치권은 파탄지경인 민생·서민경제에 대해 민심이 격앙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알량한 위안이라도 받고 싶을지 모르지만 민심의 동향을 냉철하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는 국정의 기초를 재정립하고, 여야도 설 명절 민의에 부합하기 위해 새로운 자세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한전, 입찰비리 몰랐다면 직무유기 아닌가

한국전력 전기공사 입찰 과정에서 10년간 2700억 원대의 비리가 있었다고 드러났다. 광주지검이 16일 구속수감한 한전KDN의 협력업체 직원 등 6명 등은 지난 2005년 1월부터 입찰 시스템 서버에 접속해 낙찰가를 알아내거나 조작하는 방법으로 특정업체가 낙찰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불법으로 낙찰받은 공사는 전국적으로 확인된 것만 133건, 2709억 원에 달한다. 특히 이들은 업체로부터 공사 대금의 1~10%를 '커미션' 명목으로 받는 등 모두 134억 원을 쟁겨 호화생활을 해왔다고 한다. 직원들은 금고에 5만 원권 현금 4억 1500만 원을 보관했으며 고급 아파트, 외제차는 물론 오토바이 35대를 보유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오랜 기간 입찰시스템이 유린당했는데도 한전만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10년간 돈을 주고 공사를 떠난 업체가 83개에 이르면 한전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

이들은 또 한전KDN 파견 근무가 끝날 무렵 후임자를 몰래해 수법을 알려주는 식으로 비리를 저질러왔다. 한전 내부에서 비리를 통제하고 적발하는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했으면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한심할 따름이다.

이달 초에도 한전과 한전KDN에선 상임감사를 포함한 임직원들이 5억 원의 뇌물을 받아 15명이 구속됐으며, 지난 달에도 전기공사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한전 나주시사 전·현 직원 7명이 기소되기도 했다.

이번 입찰 비리는 한전이 알고도 묵인했다. 아니면 시스템이 허술했던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다. 결과적으로 직무유기임에 분명하다. 한전은 대책도 중요하지만 책임 소재부터 가려야 한다. 검찰 역시 한전과 한전KDN에서 불법 사실을 알았는지 수사하는 한편 추가 비리가 있었는지의 여부도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인사가 만사라는 경우, 분명 옳은 말씀이다. 하지만, 굳이 '인사가 만사'라고 강조하는 것은 실제로는 인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탓이 크다.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조상 또한 예외는 아니어서 고려와 조선시대에도 인사 청탁이 솔한 말썽을 빚었다. 당시엔 인사 청탁을 '분경'이라 했는데, 대표적으로 인용되는 사례가 조선 세조 때 충청도 관찰사 김진지와 충청도 도사 강안중의 인사 청탁 로비다.

어느 날 세조는 김진지와 강안중이 정치권에 광범위한 분경을 권을 받는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었던지 더 한심한 것은 재상들의 변명이었다. 비위가 탄노란 재상들은 일제히 세조에게 나아가 "쌀과 콩은 하인들이 받았지만 미처 보고를 받지 못해 알지 못했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더 이상 일을 키웠다가는 국가시스템이 무너질 판이 되자 세조는 짐짓 물러선다. 세조가 "만일 친척이나 친구가 주는 것이 있으면 누가 감히 받지 않겠는가. 다만, 뇌물을 준 자가 죄가 있을 뿐이다. 하물며 하인들이 받고서 보고하지 않았다면 그대들이 어찌 알겠는가?"라고 하니 재상들이 모두 땅에 엎드렸다.

결국, 세조는 '분경을 금지한 나라의 법을 어긴' 김진지와 강안중을 처형하는 선에서 사건을 매듭 짓는다.

지방선거가 끝난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지지세정 측근·보은인사를 둘러싼 구설이 끊이지 않는다. '인사 청탁하면 공개하고 불이익을 준다.'라는 경고는 그야말로 엄포일 뿐. 좋은 자리와 뇌물콩 10말씩을 각 재상들에게 전달했다."라고 실도했는데, 도지사급 관리가 재상들에게 인사 청탁을 하면서 겨우 쌀·콩 10말씩을 줬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

분경(奔競)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광고개발부 2200-661 정 치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63 (대표 FAX 222-4267)	경 제 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여문매체부 2200-696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개발부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프 로젝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시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환영합니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